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12
----------	----

발의연월일: 2022년 08월 23일

발 의 자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김광성, 이은미, 박춘희의원

1. 제안이유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의 준수 책무(안 제3조)
- 나.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안 제4조)
- 다.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안 제5조)
- 라. 분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의무 및 불법시설 신고(안 제6조)
- 마.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불입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2. 08. 02. ~ 2022. 08. 22.(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2. 07. 21.~ 2022. 07. 28. 아래표 참고.

조례안	제출 의견(복지정책과)	의회 의견
-	<p>(장애인 등의 권리) 신설</p> <p>① <u>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u>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u>장애인등은</u>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평창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u>알 권리를 가진다.</u></p>	<p>【부분수용】</p> <p><u>장애인 등의 권리 신설과</u> 관련하여서는 제1항 차별금지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상세히 규정된 사항이며</p>
<p>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u>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8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육 및 홍보)</p> <p>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u>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항 장애인등의 알권리 규정은 본 조례안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무,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 시설 점검의무, 종사자 교육 등 군수에게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주로 장애인등의 알권리와는 무관하다 할수 있음</p> <p><u>제7조와 관련한 교육 실시 의무규정은 수용하고자 함.</u></p>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장애인 및 시설현황

□ 등록 장애인

(단위: 명/6.30기준)

계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신장	정신	기타
3,190	1,647	495	294	263	255	70	69	97

※ 기타 : 장루·요루 26, 언어 20, 간 19, 자폐성 17, 호흡기 9, 안면 3, 심장 2, 뇌전증 1

□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비법정시설
9	1	1	3	4

※ 지역사회재활시설(3) :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분관
비법정(4) : 장애인종합상담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연락처	(033) 330 -2505